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1강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강사 : 백영

생명보험설계사 시험안내

- 1편 보험이론 및 윤리 : 1, 2, 3장
- 2편 보험법규 : 4, 5, 6장
- 3편 생명보험
- 4편 제3보험
- ** 공통(1편, 2편) : $20 \times 3 = 60$
- ** 생명보험 / 3보험 : $10 \times 4 = 40$

1편 목차

①

-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 -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 - 제2장 생명보험 이론
 - 제3장 보험 윤리

생명보험의 정의

①

-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제도
- 저축기능 + 보장기능
- 마네스 : 1인은 만인을 위하여, 만인은 1인을 위하여

생명보험의 역사 ①

□ 고대

- 에라노이 (종교적 공제단체)
- 콜레기어 (하층민의 상호부조조합)

□ 중세

- 길드 : 동업자간 상호부조조합
- 톤틴연금 : 국가에 용자금 제공 시 종신연금 지급
- 생존율 : 파스칼
- 사망률 : 헬리

□ 근대

-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 : 영국 에퀴타블 생명

우리나라의 생명보험 ①

□ 상호부조제도

- 계 : 삼한시대부터 (돈, 곡식을 추렴, 소수에게 모아줌)
- 보 : 신라시대부터 (불교사원 공동재산 운영하여 지원)

□ 근대적 생명보험

- 1876년 최초 : 일본 생보사 국내대리점
- 1960년대 : 단체보험 성장
- 1970년대 : 개인보험산업 발전, 보험의 해 지정(1977)
- 1990년대 : 보험시장 개방, 금융자유화
- 2000년대 : 방카슈랑스 도입, 홈쇼핑 등 판매채널 다양화
- 2020년대 :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

생명보험의 기능 ①

□ 사회보장제도의 보완

- 사회보험 : 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)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
4대 보험 (연금저축보험 X)
- 공공부조 :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 제공 (고용보험 X)
- 사회서비스 :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, 가정복지 등(복지는 서비스)

□ 3층 보장

- 개인보장 : 개인연금
- 기업보장 : 퇴직연금
- 사회보장 : 국민연금

생명보험의 기능 ①

□ 사회보험 vs 민영보험 : 상호보완

- 사회보험 : 의무가입, 법률 규정,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, 사회적 형평성 (정부운영)
- 민영보험 : 임의가입, 계약 결정, 보험료 수준 보장증감, 개인별 적정성 (민간운영)

생명보험의 기능

①

- 생명보험 운용자산 현황
 - 유가증권 60% (국공채 비중이 가장 높음)
 - 대출채권 15%
 - 부동산 1.3%
- 생명보험자산의 특성
 - 장기자금, 신탁재산, 공공적 성격
- 자산운용 원칙
 - 안전성
 - 유동성
 - 수익성
 - 공익성 (공익성 무관 X)

생명보험산업 현황과 전망

①

-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
 - 1)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
 - 2017년 출산율 : 0.94명 OECD 최저 / 높은 노인빈곤율
 -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를 하향
 -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% 이상 ; 고령화사회 ; 2000년 진입
 - 14% 이상 ; 고령사회 ; 2017년 진입
 - 20% 이상 ; 초고령사회 ; 2025년 도달 전망
 - 2)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
 -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
 - 3)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
 -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의식 점점 약화

생명보험과 재무설계

①

- 재무설계
 - 재무목표를 세우고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생애 전반에 걸친 과정
- 재무설계의 필요성
 - 1) 생애 소비만족 극대화
 -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불일치
 - 중년기 잉여소득을 신탁기과 노년기로 이전
 - 2) 미래 리스크 대비
 - 물가상승, 실업, 질병, 장수
 - 3)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
 - 부동산 편중에서 금융자산 비중 확대 예상
 - 금융상품의 다양화
 - 고령사회 진입

1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2강

생명보험 이론

강사 : 백영

1편 목차

②

□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제2장 생명보험 이론

제3장 보험 윤리

생명보험의 기본 원리

②

□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: 대수의 법칙, 수지상등의 원칙

□ 대수의 법칙

- 관찰 횟수를 늘려 가면 발생 확률이 일정
- 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 사고발생확률의 정확성이 증가되어 보험단체의 안정성 상승

□ 사망률과 생명표

- 사망률 : 1년간의 사망자 수 / 연초의 생존자 수
- 국민생명표 : 전체 국민 대상
- 경험생명표 : 보험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
- 2019년 4월부터 9회 경험생명표를 표준위험률로 사용

□ 수지상등의 원칙

- 납입보험료 = 지급 보험금 + 비용
- 순보험료 계산

보험계약 관계자

②

□ 보험계약자

-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사람 = 보험료 납입의무
- 자연인, 법인, 다수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

□ 피보험자

-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, 수혜는 관계 없음
-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서면, 전자서명, 공인전자서명 필요 (구두X)

□ 보험수익자

-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

□ 보험회사(보험자)

- 보험금 지급 책임, 금융위원회 허가 (금융감독원 X, 생보협회 X)

생명보험 계약내용

②

□ 보험사고

-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
- 사망, 생존, 장애, 입원, 수술, 진단, 만기, 연금개시 등

□ 보험기간

-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(위험기간, 책임기간)

□ 보험료 납입기간

-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(매년1회 납입이 원칙)
-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(예 : 단기납)

□ 보험금액

-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

□ 보험료

-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

보험료 구성 원리 ②

□ 보험료 결정

- 수지상등의 원칙 : 보험료 납입총액 = 지급하는 보험금 + 지출비용의 총액

□ 현금흐름방식

- 3이원방식 : 예정위험률, 예정이율, 예정사업비를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가정

- 현금흐름방식 : 3이원방식 + 계약유지율, 판매량,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(회사별 최적가정 → 상품개발 확대)

보험료 구성 원리 ②

□ 배당

-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선적립 후 지급 (자유화)

□ 배당의 지급방법

- 현금지급방법
- 보험료 상계방법
- 보험금, 환급금에 가산방법 (보험금 감액방법 X)

□ 무배당보험

- 배당을 감안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므로 유배당에 비해 저렴

□ 배당의 예시

- 예상 금지되거나 예외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 실적을 근거로 가능

보험계약 성립 ②

□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

- 낙성계약 : 보험계약자의 청약 + 보험회사의 승낙

□ 보험계약 청약

- 불요식 계약이며 실무적으로 청약서 사용

-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

-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가능 (수신하였을 때 교부 인정, 송신X)

- 통신판매 : 계약자의 답변,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설명의무 완료

보험계약 성립 ②

□ 청약철회

-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(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철회 불가)

- 청약철회 시 반환보험료 : 기납입보험료
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(즉시 X)
(신용카드는 취소)

- 반환지연 시 : 기납입보험료 + 보험계약대출 이율(연단위복리)

- 청약철회 불가능 계약 :

진단계약,
전문보험계약자 체결계약(단체계약),
보험기간 90일 이내 (1년 미만X) 계약

보험계약 성립 ②

□ 청약승낙, 거절

- 낙성계약 : 청약 거절 가능
- 승낙 및 거절기간
무진단계약 :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낙 간주
(진단계약 : 진단일 기준)
- 거절 시 반환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(연복리)
(신용카드 취소)

□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
-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(주의 :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)
- 진단계약 :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된 날
(둘 중 늦은 시점이 보장개시일)
(승낙하지 않더라도 보장개시)

보험계약 성립 ②

□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
예시)

청약 승낙 보험료납입

청약 보험료납입 승낙

청약 보험료납입 건강진단 승낙

보험계약 성립 ②

□ 승낙 전 보험사고

-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: 책임

□ 보험계약 무효

-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: 기납입보험료 반환
- 무효사유
 - *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 : 피보험자의 서면동의(전자서명, 공인전자서명) 불비
 - *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로 사망이 보험사고
 - *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혹은 초과

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②

□ 보험약관의 교부, 설명의무

-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
-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*3개월 이내 취소가능 (해지X, 무효X)
 - *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가산하여 취소 시 반환

□ 보험금 지급의무

- 중도보험금 : 특정시점에 생존
- 만기보험금 : 만기까지 생존
- 사망보험금 : 보험기간 중 사망
 - *사망추정 :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고 실종선고(행방불명X)

□ 장애 정의

-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
(의학적인 판단 ; 일시적 X)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상실상태

보험금 지급 의무

②

□ 보험금 지급기일

-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: 3영업일 이내
- 지급사유조사, 확인 필요 시 : 10영업일 이내
-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시 : 30영업일 이내
-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:
소송제기, 분쟁조정신청, 수사, 해외사고

□ 보험금 미지급 사유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(참고 : 심신상실 혹은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시 자살의 경우는 지급)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보험계약자 주요 의무

②

□ 계약전 알릴의무

-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, 보험료 산정을 위해(선의성)
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
 - *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
 - *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
 - *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
 - *체결 후 3년 경과

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: 해지환급금(기납입보험료 X) 지급,
보험료 혹은 보험가입금액 조정

□ 보험료 납입의무

- 원칙은 연납이나 일시납, 연납, 월납 등

계약의 부활 등

②

□ 보험료 연체

-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 : 14일(보험기간 1년 미만시 7일) 이상
- 해지 : 납입최고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

□ 통지의무(계약후 알릴의무)

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(계약자, 수익자, 피보험자)
- 연락처, 주소 변경시(계약자, 수익자, 피보험자X)

□ 계약의 부활

-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: 3년 이내
- 부활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 범위 내
- 심사 : 신계약과 동일
-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 :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부활 가능
- 설계사 등의 부당한 계약전환 부활 : 소멸 6개월 이내 부활 청구 가능

계약의 변경 등

②

□ 보험계약의 변경

- 보험종목 변경 : 계약자가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인 경우(예: 종신→연금)
- 보험가입금액 변경 :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 (증액 X)
- 보험계약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필요
- 보험수익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불필요

□ 기타

- 사망을 보험사고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가능
- 소멸시효 : 보험금 청구권 등 3년간 미행사시 완성(보험료 청구권 2년)
-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: 임직원, 설계사, 대리점의 사유로 손해 발생시
(보험중개사 X)
- 보험계약 연령 :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기준
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
- 보험계약대출 : 해지환급금 범위 내(납입보험료 X), 언제든지 상환 가능
- 보험안내자료 :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 ②

□ 생명보험 언더라이팅

-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
- 보험료 및 가입조건 등 결정하는 과정(계약심사), 위험률차익 관리
- 역선택 방지 : 위험 사실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방지
- 필요 : 계약자간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

□ 언더라이팅 절차

- 1차 선택 : 보험설계사에 의한 선택
- 2차 선택 : 의적진단에 의한 선택
- 3차 선택 :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
- 4차 선택 : 계약적부확인에 의한 선택 ; 피보험자의 신체적, 환경적, 도덕적 위험에 대한 조사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, 클레임 ②

□ 언더라이팅 고려대상

- 환경적 언더라이팅 : 직업, 운전, 흡연, 음주, 취미, 거주지 위험
- 신체적 언더라이팅 : 연령, 성별, 병력, 신체상태
- 도덕적 언더라이팅 : 고의성, 도덕적 해이
- 재정적 언더라이팅 : 역선택 및 계약 실패 방지

□ 표준미달체, 우량체

- 표준미달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
보험료 할증, 특정질병부담보, 특정부위부담보, 보험금 삭감
- 우량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
보험료 할인

□ 클레임

-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업무 (계약적부 확인 X, 보험료산정 X)
- 사고조사 경험, 법률지식, 의학지식 필요

2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3강 보험윤리

강사 : 백영

1편 목차 ③

□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-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- 제2장 생명보험 이론
- 제3장 보험 윤리

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③

□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

- 2018년 제정
-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영업활동의 기본원칙
- 성과평과의 적정성, 내부통제, 분쟁해결 등
- 보험상품 판매 전, 후 보험소비자와의 정보불균형 해소
- 부당영업행위 금지
-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
-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제작하여 승인된 안내자료만 사용
- 권유단계 : 상품설명서 제공
- 청약단계 : 보험계약청약서 부분, 보험약관
- 관리단계 : 1년 이상 유지 보험 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제공 (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)
- 고객정보 : 동의절차 밝아 최소한 정보 제3자 제공 금지(관계법령, 고객 동의 시 가능)
-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1인 이상 지정 :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 운영

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③

□ 보험인 윤리강령

- 공공성, 공신력 제고, 성실봉사, 기술개발, 준법

□ 보험설계사 윤리의 중요성

- 고객은 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

□ 보험설계사의 자세

- 법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(설계사 X) 입장에서 행동

□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

-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제대로 된 보장설계

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 ③

□ 3대 기본지킴이 →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

- 1)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
- 2) 청약서 사본(부분) 전달
- 3) 자필서명 안내 및 확인
 - 고객(계약자 또는 피보험자)이 서명

□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(승환계약) 금지

- 고객필요에 의한 계약전환시 비교안내확인서에 자필서명

□ 불법광고 금지

- 광고는 고객 동의 후 / 보험료(대출) 연체 안내는 동의 없이 가능

□ 회사 승인 자료 사용

-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만 사용(금융감독원 승인 X)

보험회사 및 고객에 대한 책임 ③

□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

- 1) 법규, 회사규정 준수
- 2) 보험료 수령 : 회사이름 영수증 교부, 일일수금 등 변칙적인 방법 불가
- 3)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
- 4) 고객불만처리 :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림

□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

- 1) 고객의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 판매
- 2) 회사 및 상품소개 : 임의 작성시 회사승인 필요
- 3) 고객정보보호
 -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만 사용
- 4) 판매 후 지속적 관리 : 계약유지, 보험금 지급 등

보험범죄방지활동 ③

□ 보험범죄

- 형법상 사기죄 : 보험사기방지 특별법
보험사기행위는 가중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상습범 가중처벌 가능, 미수범도 처벌
- 연성사기 : 보험사고를 확대(과장)한 경우, 다른 피해자는 없음
- 경성사기 :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 / 최근 증가

□ 보험범죄 유형

- 사기적인 보험계약 : 예)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
-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: 가장 악의적
-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 : 전통적 보험범죄 (예 : 허위진단서)
- 보험금 과다청구 : 과잉진료

보험범죄와 구별되는 유형 ③

□ 도덕적 해이

- 보험사고나 손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에 의한 행동
- 내적 도덕적 해이 : 직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- 외적 도덕적 해이 : 병원, 자동차 수리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
□ 역선택

- 계산된 위험보다 위험이 높은 집단이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

*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공통점 : 정보의 불균형

*차이점 : 도덕적 해이 - 보험계약 체결 후 현실화 (예 : 무단횡단)

역선택 - 보험계약 체결 전 현실화 (예 : 발병을 숨기고 보험가입)

보험사기계약 등 ③

□ 보험사기계약의 특징

- 고액계약, 다수계약
- 비연고성, 자발성계약
-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
- 보험사기자의 개인적 속성 : 과도한 부채 등
- 보험범죄는 보험료 상승으로 선의 계약자의 피해

□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

- 보험제도의 존립기반 위협, 보험료 부담 인상
- 사회적 불리현상의 가중
- 보험범죄의 모장 가능성 증대
- 보험산업의 이미지 악화
- 공보험(건강보험)의 재정에 악영향으로 공보험료 상승

3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4강 보험모집 준수사항

강사 : 백영

2편 목차

④

□ 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업법과 보험모집

④

□ 보험모집 관련 법규

- 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/ 보험업법
- 보험업 구분 : 생명보험업, 손해보험업, 제3보험업
- 보험감독방식 : 한국은 실질적 감독주의 (공시주의 X, 준거주의 X)
(보험회사의 설립에서 해산까지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)

□ 보험모집

-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중개 : 설계사, 중개사
- 대리 : 대리점

□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

- 보험설계사 : 중개
- 보험대리점 : 대리
- 보험중개사 : 독립적으로 중개
- 보험회사 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

보험설계사 등록

④

□ 생명보험설계사

- 금융위원회에 등록
-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등록업무 위탁 받아 수행 (금융감독원 X)
-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□ 설계사 등록요건

- 모집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(유효기간 1년)
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) 경력 + 교육이수

□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 후 미복권 / 신용불량은 다른 개념
-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면제 후 2년 미만
-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
-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만
-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, 등록취소 처분 후 2년 미만
- 보험료, 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 미만

설계사 교차모집, 등록

④

□ 교차모집제도

- 일사전속주의 예외
- 1개의 이종(異種) 보험회사 상품 판매 가능
- 생명보험 ↔ 손해보험

□ 등록, 말소

- 등록 :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
- 말소 : 회사를 통한 말소, 본인이 협회에 직접 말소 ; 둘 중 하나의 방법
- 위촉과 해촉은 회사와 설계사의 관계
말소는 협회에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(말소 후 타보험회사 등록 가능)
- 등록취소 가능 사유 : 1년(6개월X)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미영업
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 위반

④

보험대리점

□ 보험대리점

- 업종 : 생명, 손해, 제3보험대리점
- 설립형태 : 개인, 법인보험대리점
- 보험회사(계약자 X)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대리, 보험료 수령 등 제공
-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사 계약 체결
- 보험금 지급, 계약적부확인 등 대리점 업무 아님
- 등록 :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 받은 협회

□ 보험대리점 등록요건

- 대리점 교육과정 이수(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신청)
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) 종사한 경력
- 법인대리점 : 대리점 등록요건 갖춘 자 1명 이상
- 이미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보험대리점 불가
- 영업보증금 : 개인대리점 1억원, 법인대리점 3억원 이내

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면제

④

보험중개사

□ 보험중개사

-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(특정 보험사 X)
-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 (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 예탁)
-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불가

□ 금융기관 보험대리점

- 방카슈랑스
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가능 기관
 - 은행, 투자매매(중개)업자, 저축은행 등
 - 신용카드업자(겸영여신업자 제외) : 전화모집 가능
-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 / 인터넷홈페이지 가능
- 방문판매, TM 불가 (신용카드업자 전화 등 판매가능)
- 점포별로 2인 (3인 X) 판매
- 종신보험, 자동차보험 판매 불가

④

보험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

□ 특별이익 제공 금지

- 연보험료 10%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
- 예) 월보험료 2만원인 경우 22,000원 선물 제공 : 가능

□ 보험안내자료 규정 위반시 벌칙

- 보험 안내자료 위반시 벌칙 :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
- 설계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*설명 의무 : 일반(전문)계약자가 중요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도록 설명

□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

- 실손의료보험

□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

- 통신 모집의 경우에도 설계사와 같은 등록(무등록자 X)
- 청약철회, 계약해지도 통신수단으로 가능
-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청약서 자필서명 취득하나 사망(장해)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로 전화모집은 음성녹음 등 요건 충족 시 자필서명 의무 면제 가능

④

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

□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

- 금융위원회 인가
- 적용 :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 및 소속 모집중개사 (대리점 X)
- 위반행위시 :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 협회에 신고

□ 제재금 (벌금X, 과태료X)

- 무자격자 모집 등 기타 100만원 이하
- 특별이익 제공 3,000만원 이하
- 경유계약(다른 모집자 처리) 200만원 이하
- 승환계약(등록말소 전후 3개월 하지 후 등록말소일 6개월 이내) 100만원 이하

*직계존비속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불가

우수인증설계사

④

□ 우수인정설계사(CIC) 자격기준

- 3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 설계사 또는 전속 개인대리점 (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 X)
- 신계약유지율 : 13회차 90%, 25회차 80% 이상
- 월납초회 월평균 80만원 이상
-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건이 없는 자
- 인증기간 :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(인증기간 1년)

4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5강

보험소비자 보호

강사 : 백영

2편 목차

⑤

□ 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소비자 보호제도

⑤

□ 예금자보호법

- 예금보험공사 : 예금보험료를 받아 지급사유 발생시 예금자에게 지급
- 지급사유 : 지급정지, 인가취소, 해산, 파산 (합병X)
- 보호대상 : 개인 및 법인 1인
- 보장금액 : 1인당 5천만원(원금 + 소정이자)
- 비보호상품 : 재보험, 보증보험, 변액보험(최저보증은 보호), 법인보험

□ 금융분쟁조정위원회

- 금융감독원 운영
- 조정 신청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
- 60일 이내 조정안
-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 (재판결과에 우선X)

□ 보험가입 조회

- 생명보험협회 :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
- 본인인증 : 공인인증서, 휴대폰, 아이핀 인증 (신분증 사본X)

광고심의제도 등 ⑤

□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

-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지정
- 계약자 = 피보험자 = 보험수익자 인 경우 가능

□ 광고심의 대상

- 간행물, 방송매체, 온라인매체 및 각종 인쇄물
- 단순 상품명, 브랜드명만 노출하는 경우 심의 제외
- 본사 이외의 지점 및 영업소, 대리점, 설계사 제작 인쇄물은 심의 제외
→ 보험회사 자체심사

□ 광고심의 절차

- 사전심의가 원칙
- 홀소핑 판매방송 : 사전심의 + 사후심의(상시 모니터링)
-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와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: 1억원 이하 제재금

보험정보의 공시 ⑤

□ 공시

- 해당 기업의 재무사항,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
- 생명보험회사 : 회사의 경영, 상품공시
- 생명보험협회 : 회사별 경영공시, 보험상품 비교공시
- 금융감독원 : 회사별 재무현황 및 금융사고 현황

□ 정기공시

- 결산공시 : 3개월 이내, 3년간 공시
- 분기공시 : 2개월 이내, 다음 공시 전까지(상반기 공시는 결산공시 전까지)

□ 수시공시

- 발생 즉시 공시, 3년간 공시
- 수시공시사항 : 중대한 사항

□ 상품공시

- 보험회사 상품공시 : 계약 관리내용, 가격공시실에서 계약자가 가입설계 가능
- 생명보험협회 : 상품비교공시

보험정보의 공시 ⑤

□ 보험다모아

-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동 운영
- 온라인 전용보험, 단독실손의료보험, 자동차보험 등
비교공시 및 가입경로 안내

□ 금융감독원 공시

-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비교, 평가 가능
- 회사별 재무현황, 금융사고 현황 등

생명보험 민원 현황과 유형 ⑤

□ 보험민원

- 민원 : 민원인이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, 진정, 건의, 질의 등의 의사표시
(고발 X)

□ 보험민원의 특징

- 보험은 어느 정도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 (사행성)
-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연결하는 판매채널 : 불완전판매 가능
-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 영향
- 보험민원은 악성민원인(문제행동소비자)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큼

□ 보험민원의 주요유형

- 최다민원 :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
- 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(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)

5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6강

생명보험 세제

강사 : 백영

2편 목차 ⑥

- 2편 보험법규
 - 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 - 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 - 제6장 생명보험 세제

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⑥

-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
 - 보장성보험 : 만기환급금 ≤ 납입보험료
 -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, 개인사업자X
 -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, 12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 - 기본공제대상자 :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배우자/장애인 나이 무관
 -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: 100만원 한도 15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 - 중도해지 :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
 -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소득공제
- 연금계좌
 - 연금저축계좌 : 연금저축보험
연금저축신탁
연금저축펀드
 - 퇴직연금계좌 :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
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
*확정급여형(DB형)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

연금계좌 세액공제 ⑥

- 연금계좌 세액공제
 - 종합소득자 납입액 12%(지방소득세 별도)
 -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 5,500만원 이하) 15%(지방소득세 별도)
- 연금계좌 납입액 (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)
 - 소득수준별 연 300만원(종합소득 1억초과)에서 400만원까지
 - 연 1,800만원까지 납입가능
 - 총급여 8천만원 근로소득자 사례(50세미만) (단위:만원)

연금저축계좌 납입액	퇴직연금계좌 납입액	세액공제 대상금액	세액공제액 (공제금액×12%)
0	700	700 (=0+700)	84
200	500	700 (=200+500)	84
500	200	600 (=400+200)	72
700	0	400 (=400+0)	48

연금보험 vs 연금저축 ⑥

□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

- 10년 이상
- 일시납 1억원
- 월적립식(월150만원) 납입기간 5년 이상(선납 6개월 이내)
- 종신형으로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(중도해지 불가)

구 분	연금보험	연금저축
취급기관	생명보험회사	모든 금융기관
세제혜택 적용요건	일시납,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, 종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	보험료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
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	없 음	연금계좌 세액공제
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	보험차익 비과세 (이자소득세 비과세)	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(3~5% 세율 적용, 지방소득세 별도)
소득구분	이자소득	연금소득

보험 세제 ⑥

□ 단체보장성보험료 손금산입

-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급여에 해당 (회사는 손금(비용), 종업원은 급여에 해당)
- 연 70만원 이하 : 복리후생비로 회사는 손금 인정, 종업원 세부담 없음
- 연 70만원 초과 : 일반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

□ 퇴직연금

-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
-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
-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-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

보험금의 상속 증여 ⑥

□ 상속 및 증여세

- 상속세(사망시), 증여세(생전)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
- 포괄주의
- 세율 : 1억 이하 10% ~ 30억 초과 50% 누진

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

-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
- 사례 : 계약자, 피보험자(父) / 수익자(子) / 보험금 5천만원
보험료 1천만원 중 父 8백만원 납입

5천만원 X 8백만원 / 1천만원 = 4천만원(상속재산)

□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

- 수익자 ≙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상속세 과세
- 수익자 =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과세X

보험금의 상속 증여 ⑥

□ 상속순위

- 1순위 : 직계비속 + 배우자
- 2순위 : 직계존속 + 배우자
- 3순위 : 형제자매
-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
- 태아는 상속순위 인정
-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을 가산

□ 금융재산 상속공제

- 순금융재산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
- 2천만원 이하 : 전액
-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천만원
- 1억원 초과 : 순금융재산 20%(2억원 한도)

보험 세제 ⑥

-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
 -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
 -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봄
-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
 -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
 - 장애인이 보험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

소득세법 ⑥

- 과세소득의 범위
 - 개인의 소득에 대해 열거주의
 -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
 - 종합과세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
 - 분류과세 : 퇴직, 양도, 금융투자소득(2023)
- 종합소득세 계산
 - 1.1 ~ 12.31까지 소득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 신고, 납부
 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종합소득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 등)
 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 - 세율 : 1,200만원 이하 6% ~ 10억원 초과 45% 누진
- 금융소득 과세
 - 금융소득 = 이자소득(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) + 배당소득(집합투자기구 이익 포함)
 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
 - 분리과세 :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

보험세제 ⑥

-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
 -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은 총연금이 연 1,200만원 이하
 - *55세 이후 수령, 5년경과 수령,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
 -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
 - *70세 미만 : 5%
 - 80세 미만 : 4% (중신형 4%)
 - 80세 이상 : 3% (중신형 3%)
 - 연금수령조건 미충족 : 기타소득으로 15% 적용
- 보험설계사 세제
 -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
 - 보험회사는 설계사 수당 지급 시 3%(지방소득세 별도)를 원천징수
 - 간편장부 대상자 : 신규 /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,500만원 미만
 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: 직전 7,500만원 이상 /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6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 7강
생명보험의 개요 및 상품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⑦

□ 3편 생명보험

제7장 생명보험의 개요

제8장 생명보험 상품

생명보험의 개요

⑦

□ 생명보험 관련 법규

- 상법 보험편 : 생명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(표준약관 근거)
- 보험업법 : 보험감독
- 기타 : 공정거래법, 자본시장법, 예금자보호법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

□ 생명보험의 정의

- 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(우연성)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(보험업법)

□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 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생명보험의 특징

⑦

□ 생명보험계약의 특성

- 유상, 쌍무계약성 :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,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
- 불요식, 낙성계약
- 부합계약성 : 약관을 전체로 동의하거나 거절(작성자 불이익의 원칙)
- 사행계약성 : 장래의 우연한 사고(경제 안정을 위한 소극적 이익추구)
- 선의계약성 : 신의성실의 원칙, 고지의무
- 계속계약성
- 상행위성 : 보험회사 및 계약자 모두 상법 적용
- 개별성, 단체성 : 계약자는 개별,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

□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

- 무형의 상품 : 구매 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
- 미래지향적, 장기효용성 상품 :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인식
- 청약과 승낙 등 절차 필요 : 계약자 청약 + 보험회사 승낙(증권교부X)
고지의무, 필요시 건강진단, 심사 등 절차
- 다양한 설계가 가능
- 계약후 관리가 필요 : 예) 갱신안내

생명보험 상품의 구성

⑦

□ 상품개발 원칙

-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경우 기초서류 작성
사업방법서(계획서)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(청약서X)
- 금융위원회 신고 (생명보험협회X, 금융감독원X)

□ 주계약과 특약

- 주계약 :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(보장성, 저축성)
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가능
- 특약 : 고객 니즈에 따라 주계약에 특약을 추가
특약만의 가입은 불가

*보장 추가, 확대 특약 : 암보장, 입원특약 등

*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: 우량체할인특약, 선지급서비스특약, 연금전환특약 등

생명보험상품의 분류 ⑦

□ 상품 분류

- 주보험 보험사고 기준 :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- 개인 보장성 : 사망(종신, 정기) / 제3보험(질병, 상해, 간병)
- 개인 저축성 : 생존(연금, 교육) / 생사혼합
개인형퇴직연금(IRP)

□ 개인보험 vs 단체보험 (보험계약자 수가 아닌 대상에 따라)

- 개인보험 :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
- 단체보험 :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
계약관리 편리
보험료 저렴

보험상품의 분류 ⑦

□ 보장성 VS 저축성

- 보장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(만기환급금)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
*만기환급금 ≤ 기납입보험료
*정기보험, 종신보험, 제3보험
- 저축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
*만기환급금 > 기납입보험료
*연금보험, 교육보험, 연금저축보험 등

□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
- 생존보험 : 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; 연금보험, 교육보험
- 사망보험 : 보험기간 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 ; 정기보험, 종신보험
- 생사혼합보험 : 사망보험(보장) + 생존보험(저축)

보험상품의 분류 ⑦

□ 일반계정 VS 특별계정

- 특별계정 : 일반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에서 운용
- 특별계정상품 : (세제적격)연금저축보험, (실손의료보험X)
퇴직연금원리금보장보험, 퇴직보험, 변액보험, 자산연계형보험

□ 준비금의 이자적립방식

- 확정금리형
- 금리연동형 : 대부분 저축성보험
- 실적배당형 : 변액보험(투자성과가 100% 계약자에게 귀속)
- 자산연계형 :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
최저보증이율(1-2%) + 추가이율
변액보다 안정적이며 일반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

□ 정액보험 VS 실손보험

- 정액보험 : 보험금 확정(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)
- 실손보험 :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액 일부는 본인이 부담(본인부담제)

보험상품의 분류 ⑦

□ 갱신형 VS 비갱신형

- 갱신형 상품 : 일정기간 경과 후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
- 실손의료보험, 일부 질병보험, 간병보험에 적용
- 갱신여부는 가입자가 결정
-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

□ 기타

- 진단, 무진단
- 배당, 무배당
- 저해지환급형 보험 : 보험료를 낮추고 중도해지 환급금도 줄인 보험
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도 판매

주요 생명보험 상품 ⑦

□ 종신보험

-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
- 특약 추가로 종합보장형 보험설계 가능

□ 교육보험

- 부모 생존시에는 교육자금, 부모 사망시에는 교육 및 양육자금 지급
- 저축성보험 + 생존보험 / 사망보험금X
-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등으로 옮겨가면서 판매량 감소

□ 어린이보험

-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
- 사망보장X, 만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
- 만 15세미만 사망시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소멸

주요 생명보험 상품 ⑦

□ 유니버설보험

- 보험료 추가납입, 중도인출 가능(유니버설 기능)
- 기본보험금(변동보험금X)에 공시이율(예정이율X)로 부리 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

□ 장애인보험

- 비장애인인 동일한 심사,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거절 불가
-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장애인전용보험상품 : 재해사망, 질병사망 모두 보장 가능 / 회사별 차이
- 세제혜택 : 세액공제 100만원 추가(15%)
장애인인 수익자인 보험금 연간 4천만원 한도 증여세 비과세
- 장애인전용보험 제도성특약 :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도 장애인세액공제 가능
-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

주요 생명보험 상품 ⑦

□ 연금보험

- 연금개시 전 : 제1보험기간, 연금지급기간 : 제2보험기간
- 제1보험기간 사망시 : 책임준비금(사망보험금) 지급 후 계약 소멸 (해지환급금X)

- 연금의 지급방법

- *종신연금형 : 평생 지급 ; 연금지급 후에는 해지 불가
- *확정연금형 : 연금지급기간 확정
- *상속연금형 :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

- 세제적격연금저축

- *최소납입기간 : 5년 (10년 X)
- *납입한도 : 연 1,800만원 (분기 300만원 X)
- *근거법령 : 소득세법 (조세특례제한법 X)
- *보험료 공제 : 세액공제 (소득공제 X)

주요 생명보험 상품 ⑦

□ 퇴직연금

-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
-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
- 제도 종류

- *확정급여형(DB) :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
- *확정기여형(DC) :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
- *개인형퇴직연금(IRP) :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, 개인적 가입
- *기업형 IRP : 상시근로자 10인(5인X) 미만 사업장

- 퇴직연금사업자 : 보험회사, 은행, 증권, 근로복지공단 (국민연금관리공단X)
- 가입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- 자산관리 계약 : 보험계약, 신탁계약
- 근로자 교육 : 연 1회 이상
- 판매 :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자

제3보험의 개요 ⑧

- 제3보험의 정의
 - 생명보험(정액보상)과 손해보험(실손보상) 성격을 함께 가짐 / Gray Zone
 - 생보사, 손보사는 제3보험 겸영 가능
 - 보험사고 : 신체의 상해, 질병, 간병
 - 피보험이익 : 원칙적으로 없음(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)
- 제3보험의 구분
 - 상해보험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 비용 및 사망보장
 - 질병보험 : 질병발생 및 그로 인한 입원, 수술, 통원 등 보장
 - 간병보험 :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애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
-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 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 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 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제3보험 관련 법규 ⑧

- 상법상의 지위
 -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 없음
 - 상해, 질병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/ 간병보험은 상법에 미반영
 - 생명보험의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 사망은 무효이나 상해보험은 적용 받지 않음
 - 질병보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
- 보험업법상 근거
 - 3보험업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 (생보나 손보의 일부 X)
 - 3보험 가능 보험사 : 독립 제3보험사,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
- 제3보험 모집자격
 -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
 - 시험합격 + 교육이수 / 3년 이내 3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+ 교육이수
 - 제3보험만 모집하려면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 등록 (양협회X)

제3보험의 특징 ⑧

- 제3보험의 특징
 - 겸영 : 생보, 손보는 겸영금지이나 제3보험은 겸영허용
 - 질병사망특약 요건
 - *생명보험 : 보험기간 제한 없음 / 보험금액 제한 없음
 - *손해보험 : 보험기간 80세까지 / 보험금액 2억원
 - 보험금의 지급방법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
 - 피보험이익 : 손해보험에서 필수 개념(실손보상이 가능한 제3보험 존재)
 - *금전으로 산정 가능
 - *보험사고 전에 확정
 - *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계약 (생명보험,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 해당사항 없음)
- 제3보험 설계기준
 -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
 -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
 -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며 실손보상은 비례보상

상해보험 ⑧

- 상해보험 의미
 -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 보장 상품
 - 상해인정 여부에 대해 다름의 여지가 생명보험보다 많음
- 생명보험 VS 상해보험
 - 상해보험 : 사고 발생 여부 및 발생시기, 발생원인, 피해정도 등이 불확정적
 - 생명보험은 발생시기만 불확정적
- 상해사고의 요건 (3가지 동시 충족)
 - 1) 우연성 :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
 - 2) 외래성 : 신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기인
 - 3) 급격성 :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(계속성X지속성X)
 - *상해와 질병 관계
 -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상
 -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제외

상해보험의 종류

⑧

□ 상해의 개념

- 반드시 외관상 상처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는 않음(부상보다 넓은 개념)

□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

- 재해사망보험금
- 재해장해급여금 : 장해분류표상
- 재해수술급여금 : 재해분류표상
- 재해입원급여금
- 만기환급금 : 만기환급형인 경우로 만기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

□ 상해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1년 이상
- 가입대상 및 연령 : 고연령자도 가능 (일부 위험직 제외)
(연령에 관계없는 단일률)
- 직업별위험률 적용 : 직종별 위험등급
- 보장하지 않는 사망 : 예로 암사망은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소멸
(질병사망은 특약으로 보장 가능)

상해보험

⑧

□ 직업,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

-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 :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 적용
- 위험한 직업, 직무 변경시 :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 (설계사 X)
- 통지의무 불이행시 : 보험금 삭감 가능
- 보험회사는 직업(직무) 변경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(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)
-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있음

*예) 사무직에서 귀농 : 통지의무

질병보험

⑧

□ 질병보험

- 질병 :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
- 질병 : 원인이 신체에 내재 / 외래성 X / 노화로 인한 요통
- 상해 : 원인이 외부에 존재 / 외래성 O /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

□ 질병보험의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
- 가입가능 연령 : 대부분 만15세 이상
-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높아짐 (고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제한)
(상해보험 :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)
- 일반사망은 특약으로 가능

질병보험의 종류

⑧

□ 암보험

- 대표적인 질병보험
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(만15세 이상)
- 보장개시 : 일반적으로 90일 이후 보장개시
- 만기환급 유무 : 만기환급형, 순수보장형
- 주계약, 특약 모두 가능
- 제자리암의 경우 암관련 보험금의 10~20% 지급

□ 암보험금의 종류

- 암진단보험금 : 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
-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 : 동일한 암 치료로 2회 이상 입원시 1회 입원으로 간주
합산 계산 /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회당 최고한도일 기준 보장
(암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지급예외)
-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
- 암수술보험금
- 암사망보험금 : 특약

실손의료보험

⑧

□ 실손의료보험 개요

- 질병, 상해로 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
-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+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 (2018년 4월부터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)
- 비례보상 : 중복가입시 초과이득 금지

□ 실손의료보험 현황

- 新실손의료보험(2021) : 주계약(급여) + 특약(비급여)
- 연간 보장한도 : 급여 5천만원, 비급여 5천만원 (통원 회당 20만원 이내) (30만원X)
- 자기부담률 : 급여 20%, 비급여 30%
- 공제금액(통원) : 급여 의원급 최소 1만원, 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최소 3만원
- 보험료 차등제 : 비급여만 적용(할인, 할증방식 ; 2024년 7월부터) (의료취약계층 예외)

간병보험

⑧

□ 간병보험

-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
- 일상생활장애상태 :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, 화장실 사용하기, 목욕하기,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(말하기 X)

□ 간병보험의 종류

- 공적 장기간병보험 :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; 사회보험 방식
*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른 1,2등급 판정 필요 (정액보험금 X)
- 민영 장기간병보험 : 공적보험보다 먼저 시작
*보험금 지급방식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; 우리나라 정액보상형태 일상생활장애상태,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

간병보험

⑧

□ 간병보험 면책

- 일상생활장애보장 : 90일
- 중증치매보장 : 2년
- 면책사항 : 알콜중독, 정신질환

□ 간병보험의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대부분 종신(일부 80세 만기형)
- 가입가능 : 일반적으로 30세 이후
- 위험률변동제도 :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위험률(보험료) 조정

합격을 기원합니다
baehom@naver.com